

제36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3월12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한국광업공단법안
7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수소산업육성법안
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1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 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소상공인기본법안
- 137. 소상공인기본법안
-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1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박명재·김석기·주호영·김상훈·정태욱·윤재욱·이채익·정운천·곽상도·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12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선동·이찬열·김종석·김규환·김성식·박맹우·오제세·이종구·이채익·경대수·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12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종걸·이동섭·윤영일·전재수·이찬열·김영진·서영교·강창일·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12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종희·박준영·손금주·신용현·유성엽·이용호·이찬열·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12
-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경진·김해영·박광운·이동섭·김종희·황주홍·주승용·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12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박정·박광운·

- 김해영·이수혁·김병욱·고용진·이춘석·임종성·송갑석 의원 발의)(계속) 12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8.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영표·우원식·서삼석·노웅래·이찬열·백재현·김병기·신창현·송옥주·박찬대·유동수·김철민·홍의락·여기구·김종민 의원 발의) 13
1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13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최연혜·권성동·김정재·조훈현·김한표·윤종필·강길부·이진복·곽대훈·원유철·金成泰·박맹우 의원 발의) 13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3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이인영·홍익표·박광온·인재근·이훈·안민석·윤관석·설훈 의원 발의) 13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정·김정우·손금주·정성호·원혜영·윤후덕·김영호·심재권·금태섭 의원 발의) 13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윤한홍·金成泰·강효상·신상진·김상훈·김도읍·장석춘·박덕흠·윤상직 의원 발의) 13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14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상훈·이진복·박성중·김승희·박완수·윤종필·박맹우·이채익·최교일 의원 발의) 14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곽대훈·김기선·김태흠·추경호·정진석·김성원·이채익·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88) 14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곽대훈·김기선·김태흠·추경호·정진석·김성원·이채익·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56) 14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도읍·이은권·이종배·최교일·박명재·윤상직·유민봉·이종명·강석호·김규환 의원 발의) 14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성환·김성수·김종민·송갑석·위성곤·백재현·김병관·최인호·이원욱 의원 발의) 14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4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4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박정·이원욱·송갑석·김성환·김철민·제윤경·신창현·박광온·이재정·고용진 의원 발의) 14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김종민·홍익표·정세균·강훈식·이훈·소병훈·서삼석·김병관·박정·우원식·인재근 의원 발의) 14
2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현·안호영·금태섭·조승래·윤준호·홍익표·황희·김해영·전재수·이후삼 의원 발의) 14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석기·추

경호·김규환·정갑윤·곽상도·김상훈·유재중·김기선·이진복 의원 발의) 14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현재·엄용수·원유철·윤상직·김세연·김선동·여상규·추경호·김성찬 의원 발의) 14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이양수·홍문중·김승희·김학용·김종석·이철규·장석춘·문진국·임이자·전희경·김정재 의원 발의) 14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유동수·홍의락·이훈·박영선·윤관석·정세균·조정식·서삼석·박재호 의원 발의) 14

3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전재수·안호영·서영교·박재호·윤준호·신창현·김병욱·제윤경·송갑석·송옥주·민병두·노웅래·인재근·맹성규·김철민·홍의락 의원 발의) 14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김현권·김정호·문진국·김경협·전재수·김병욱·민홍철·서삼석·이상헌·정성호 의원 발의) 14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권은희·이동섭·황주홍·이용주·김종로·김수민·신용현·채이배·이용호·김관영 의원 발의) 14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삼화·임재훈·박선숙·김수민·주승용·이동섭·유동수·엄용수·채이배 의원 발의) 14

3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윤종필·김선동·나경원·김현아·원유철·임이자·윤한홍·주호영·유재중 의원 발의) 15

3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15

3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기동민·전재수·금태섭·남인순·민홍철·김병기·한정애·윤호중·김병욱 의원 발의) 15

3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임이자·윤재옥·이채익·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승희·이은권·김성원·이언주 의원 발의) 15

3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조정식·김수민·김세연·박성중·유승민·김삼화·박덕흠·유동수·이언주·홍철호·권은희·김철민·윤영일·박홍근·황희·박완수·송석준·강석호·강훈식 의원 발의) 15

4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5

4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이찬열·김영진·윤관석·이수혁·윤영일·전재수·김현권·김민기·윤후덕·이석현 의원 발의) 15

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15

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5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15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임이자·경대수·김종석·정태옥·홍문표·김용태·박성중·김성원·김무성·신보라·민경욱 의원 발의) 15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박정·권철승·정인화·송갑석·백혜련·최재성·김정우·정동영·김영호·윤준호·고용진·강훈식·금태섭 의원 발의) 15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정갑윤·성일종·박덕흠·김기선·박완수·안상수·윤영석·이채익·추경호·김재원 의원 발의) 15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김중희·이찬열·장정숙·정

- 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81) 15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김종희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84) 15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현권 · 정세균 · 김병기 · 강훈식 · 이후삼 · 김영진 · 안호영 · 김철민 · 우원식 의원 발의) 15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백재현 · 홍의락 · 이종걸 · 최인호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15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15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15
5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송희경 · 박명우 · 추경호 · 주광덕 · 김석기 · 곽대훈 · 박대출 · 조경태 · 권성동 의원 발의) 15
5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5
5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57.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박완수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이종명 · 김도읍 의원 발의) 16
5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59.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16
6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16
6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안호영 · 고용진 · 정세균 · 황주홍 · 원유철 · 추미애 · 한정애 · 최인호 · 박범계 의원 발의) 16
6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윤준호 · 백재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황희 의원 발의) 16
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16
6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윤종필 · 김선동 · 나경원 · 김현아 · 원유철 · 임이자 · 윤한홍 · 주호영 · 유재중 의원 발의) 16
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66.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16
6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신경민 · 이인영 · 홍익표 · 박광온 · 인재근 · 이훈 · 안민석 · 윤관석 · 설훈 의원 발의) 16
6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안호영 · 백재현 · 유승희 · 송기현 · 최인호 · 이종걸 · 고용진 · 김민기 · 박주민 의원 발의) 16
6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석기 · 추경호 · 김규환 · 정갑윤 · 곽상도 · 김상훈 · 유재중 · 조경태 · 정진석 의원 발의) 16
7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7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윤재옥 의원 발의)	16
7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16
7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7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윤재옥 의원 발의)	16
75.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정재호 · 송갑석 · 김성환 · 홍의락 · 강길부 · 박정 · 권철승 · 박범계 · 우원식 · 강병원 · 신창현 · 김성수 · 최인호 · 위성곤 · 한정애 의원 발의)	16
7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7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김정재 · 엄용수 의원 발의)	16
7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17
7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7
8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17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강훈식 의원 발의)	17
8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위성곤 · 안호영 · 유동수 · 서삼석 · 박정 · 백재현 · 서영교 · 김두관 · 심기준 · 노용래 · 윤준호 의원 발의)	17
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성일중 · 김광림 · 강석호 · 박명재 · 이채익 · 이진복 · 김중석 · 김현아 · 신상진 · 김재경 의원 발의)	17
8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7
85.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김상훈 · 이진복 · 박성중 · 김승희 · 박완수 · 주광덕 · 윤종필 · 박맹우 · 최교일 의원 발의)	17
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17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 · 김중회 · 박주현 · 송갑석 · 심상정 · 유성엽 · 이찬열 · 장정숙 · 정인화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17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김승희 · 유기준 · 김영우 · 김상훈 · 김정훈 · 김수민 · 정유섭 · 김기선 · 강석진 · 유민봉 · 심재철 의원 발의)	17
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 · 강훈식 · 백재현 · 김병기 · 이인영 · 김영진 · 김진표 · 윤관석 · 윤준호 · 유승희 의원 발의)	17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현권 · 정세균 · 김병기 · 강훈식 · 이후삼 · 김영진 · 안호영 · 김철민 · 우원식 · 홍의락 의원 발의)	17
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백재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의원 발의)	17

9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7
9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 · 김도읍 · 박덕흠 · 이은권 · 주호영 · 원유철 · 이명수 · 정우택 · 박맹우 · 유민봉 의원 발의) 17
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7
9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7
9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17
9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이상현 · 김두관 · 김해영 · 백재현 · 유동수 · 김경협 · 송옥주 · 윤관석 · 최인호 의원 발의) 17
9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이현승 · 김재경 · 송석준 · 유기준 · 조경태 · 김도읍 · 윤영석 · 추경호 · 윤상현 · 이양수 · 이진복 · 김상훈 의원 발의) 17
9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전해숙 · 김철민 · 황희 · 위성곤 · 박정 · 박광온 · 서형수 · 이석현 · 신경민 · 김해영 의원 발의) 18
10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18
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이철규 · 이만희 · 김상훈 · 광대훈 · 박완수 · 이현승 · 김성원 · 이은권 · 송석준 의원 발의) 18
10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서영교 · 박찬대 · 박정 · 이찬열 · 송영길 · 정유섭 · 윤관석 · 민경욱 · 신동근 · 홍일표 의원 발의) 18
10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주호영 · 김세연 · 권성동 · 김선동 · 이종배 · 추경호 · 김정재 · 박인숙 · 안상수 · 박덕흠 의원 발의) 18
10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이종명 · 광대훈 · 조배숙 · 장석춘 · 조원진 · 박완수 · 김선동 · 이주영 · 신상진 의원 발의) 18
1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유기준 · 김수민 · 김승희 · 김성찬 · 박맹우 · 김영우 · 이주영 · 송언석 · 문진국 의원 발의) 18
10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우원식 · 박정 · 황희 · 어기구 · 이원욱 · 권칠승 · 김영호 · 김병관 · 설훈 · 송갑석 의원 발의) 18
10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김승희 · 김수민 · 임이자 · 김선동 · 민경욱 · 이은권 · 이종배 · 이종명 · 이동섭 · 광대훈 의원 발의) 18
10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강훈식 의원 발의) 18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 · 김현권 · 우원식 · 백재현 · 홍의락 · 송갑석 · 이학영 · 박정 · 최인호 · 송옥주 의원 발의) 18
11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권은희 · 황주홍 · 이용주 · 김중로 · 김수민 · 신용현 · 채이배 · 이용호 · 김관영 의원 발의) 18
1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동섭 · 정우택 · 박선숙 · 이찬열 · 송기현 · 신창현 · 서삼석 · 김철민 · 박정 · 최운열 의원 발의) 18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백재현 · 이종걸 · 최인호 · 홍의락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18
113.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 · 김영진 · 권칠승 · 심재권 · 전해철 · 안호영 · 고용진 · 최인호 · 홍익표 · 윤관석 · 김진표 의원 발의) 18

- 1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송갑석 · 원혜영 · 정동영 · 금태섭 · 강길부 · 김성환 · 박정 · 유승희 · 우원식 의원 발의) 18
- 1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8
-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박정 · 박재호 · 김철민 · 김현권 · 설훈 · 김종민 · 홍문표 · 윤영일 · 정성호 · 이찬열 의원 발의) 18
- 1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8
-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송갑석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김병기 · 이석현 · 송영길 · 김철민 · 윤호중 · 정성호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60) 19
- 1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안호영 · 백재현 · 유승희 · 송기현 · 최인호 · 이종걸 · 고용진 · 김민기 · 박주민 의원 발의) 19
- 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추혜선 · 송기현 · 김철민 · 윤준호 · 서영교 · 김경협 · 박재호 · 김진표 · 김성수 · 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7307) 19
- 1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이찬열 · 이동섭 · 김종희 · 김삼화 · 최도자 · 하태경 · 신용현 · 강길부 · 조정태 의원 발의) 19
- 1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종희 · 전재수 · 오제세 · 전해숙 · 박재호 · 임종성 · 안규백 · 김철민 의원 발의) 19
- 12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송갑석 · 박정 · 위성곤 · 백재현 · 권칠승 · 박범계 · 어기구 · 송기현 · 이원욱 · 박재호 의원 발의) 19
- 12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9
- 1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 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
- 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훈 · 이상현 · 송갑석 · 금태섭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김병기 · 주승용 의원 발의) 19
-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9
- 1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규희 · 송갑석 · 한정에 · 추미애 · 김병기 · 이훈 · 이상현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남인순 · 주승용 의원 발의) 19
- 1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 · 김현권 · 우원식 · 백재현 · 홍의락 · 송갑석 · 이학영 · 박정 · 최인호 · 송옥주 · 기동민 · 김정우 의원 발의) 19
- 1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추경호 · 주호영 · 윤종필 · 민경욱 · 홍문표 · 김성찬 · 원유철 · 박맹우 · 곽대훈 · 김영우 · 박덕흠 · 송희경 의원 발의) 19
- 1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 · 위성곤 · 김혜영 · 송기현 · 박홍근 · 유승희 · 박정 · 최인호 · 이찬열 · 전재수 · 홍의락 의원 발의) 19
- 1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9
- 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서삼석 · 김종민 · 어기구 · 송갑석 · 권칠승 · 이규희 · 위성곤 · 정태욱 · 김종훈 · 김철민 의원 발의) 19
- 1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추경호 · 성일종 · 윤영석 · 김규환 · 강석호 · 이종배 · 김정재 · 송언석 · 김성원 의원 발의) 19
- 136.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박완수 · 박덕흠 · 추경호 · 조훈현 · 윤영일 · 김현아 · 유의동 · 송언석 · 박명재 의원 발의) 19

137. 소상공인기본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김종석 · 황주홍 · 이찬열 · 이철규 · 김중로 · 성일중 · 하태경 · 김영우 · 조경태 의원 발의) 19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김종석 · 이찬열 · 이철규 · 황주홍 · 김중로 · 성일중 · 하태경 · 김영우 · 조경태 의원 발의) 19
1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9
1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백재현 · 김영진 · 박찬대 · 박영선 · 표창원 · 이춘석 · 김현권 · 임종성 · 정세균 · 정성호 의원 발의) 20
141.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송옥주 · 이상헌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박광온 · 김철민 · 유동수 · 황희 의원 발의) 20
142.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신용현 · 김수민 · 김삼화 · 김중로 · 손금주 · 김동철 · 주승용 · 김관영 · 박주선 · 최경환(평) 의원 발의) 20
1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정세균 · 홍익표 · 이원욱 · 권칠승 · 이훈 · 백재현 · 설훈 · 홍의락 · 우원식 · 김성환 의원 발의) 20
14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김종희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의원 발의) 20
1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황주홍 · 김종희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의원 발의) 20
1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인재근 · 김현권 · 김영진 · 윤후덕 · 설훈 · 오영훈 · 이학영 · 표창원 · 추혜선 · 송갑석 · 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72) 20
14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전해숙 · 윤후덕 · 이원욱 · 제윤경 · 강병원 · 김성환 · 홍의락 · 김현권 · 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46) 20
1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정세균 · 홍익표 · 이원욱 · 권칠승 · 이훈 · 백재현 · 설훈 · 홍의락 · 우원식 · 김성환 의원 발의) 20
1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헌 · 윤준호 · 박범계 · 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강훈식 의원 발의) 20
1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 · 박재호 · 남인순 · 전해철 · 심재권 · 민홍철 · 정재호 · 김진표 · 김영진 · 신창현 의원 발의) 20
1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김상훈 · 곽대훈 · 유재중 · 이채익 · 金成泰 · 이은권 · 김명연 · 주호영 · 성일중 의원 발의) 20
1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백재현 · 이종걸 · 최인호 · 홍의락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20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홍익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오늘에서야 열게 돼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전

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가 하락하고 일자리 축소에 따른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 · 중 무역 갈등과 하드 브렉시트의 우려 속에서 수출 부진 및 이에 따른 경기 둔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안전관리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미세먼지 문제와 결합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국민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위원회를 여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시다만 국회 의사일정이 3월 임시회부터 합의되었으므로 당면 현안에 대응하는 우리 위원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한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사하십시오.

다음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차관입니다.

다음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오늘 회의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불출석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대리출석을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박명재·김석기·주호영·김상훈·정태욱·윤재욱·이채익·정운천·곽상도·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선동·이찬열·김종석·김규환·김성식·박맹우·오제세·이종구·이채익·경대수·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종걸·이동섭·윤영일·전재수·이찬열·김영진·서영교·강창일·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종희·박준영·손금주·신용현·유성엽·이용호·이찬열·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경진·김해영·박광운·이동섭·김종희·황주홍·주승용·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박광운·김해영·이수혁·김병욱·고용진·이춘석·임종성·송갑석 의원 발의)(계속)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14시09분)

○**위원장 홍일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언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안은 곽대훈 의원, 윤한홍 의원, 정재호 의원, 조배숙 의원, 이찬열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해서 심사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늦게 열렸지만 오늘 법안 처리가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언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8.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13분)

○위원장 홍일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인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홍일표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3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영표·우원식·서삼석·노웅래·이찬열·백재현·김병기·신창현·송옥주·박찬대·유동수·김철민·홍의락·어기구·김종민 의원 발의)

1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최연혜·권성동·김정재·조훈현·김한표·윤종필·강길부·이진복·곽대훈·원유철·金成泰·박맹우 의원 발의)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이인영·홍익표·박광운·인재근·이훈·안민석·윤관석·설훈 의원 발의)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유승희·박찬대·윤관석·박정·김정우·손금주·정성호·원혜영·윤후덕·김영호·심재권·금태섭 의원 발의)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김기선 · 윤한홍 · 金成泰 · 강효상 · 신상진 · 김상훈 · 김도읍 · 장석춘 · 박덕흠 · 윤상직 의원 발의)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김상훈 · 이진복 · 박성중 · 김승희 · 박완수 · 윤종필 · 박맹우 · 이채익 · 최교일 의원 발의)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재 · 광대훈 · 김기선 · 김태흠 · 추경호 · 정진석 · 김성원 · 이채익 · 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88)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재 · 광대훈 · 김기선 · 김태흠 · 추경호 · 정진석 · 김성원 · 이채익 · 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56)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임이자 · 문진국 · 김도읍 · 이은권 · 이종배 · 최교일 · 박명재 · 윤상직 · 유민봉 · 이종명 · 강석호 · 김규환 의원 발의)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김성환 · 김성수 · 김종민 · 송갑석 · 위성곤 · 백재현 · 김병관 · 최인호 · 이원욱 의원 발의)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2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박정 · 이원욱 · 송갑석 · 김성환 · 김철민 · 제윤경 · 신창현 · 박광온 · 이재정 · 고용진 의원 발의)
2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김종민 · 홍익표 · 정세균 · 강훈식 · 이훈 · 소병훈 · 서삼석 · 김병관 · 박정 · 우원식 · 인재근 의원 발의)
2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금태섭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석기 · 추경호 · 김규환 · 정갑윤 · 광상도 · 김상훈 · 유재중 · 김기선 · 이진복 의원 발의)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이현재 · 엄용수 · 원유철 · 윤상직 · 김세연 · 김선동 · 여상규 · 추경호 · 김성찬 의원 발의)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이양수 · 홍문중 · 김승희 · 김학용 · 김종석 · 이철규 · 장석춘 · 문진국 · 임이자 · 전희경 · 김정재 의원 발의)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유동수 · 홍의락 · 이훈 · 박영선 · 윤관석 · 정세균 · 조정식 · 서삼석 · 박재호 의원 발의)
3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전재수 · 안호영 · 서영교 · 박재호 · 윤준호 · 신창현 · 김병욱 · 제윤경 · 송갑석 · 송옥주 · 민병두 · 노웅래 · 인재근 · 맹성규 · 김철민 · 홍의락 의원 발의)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김현권 · 김정호 · 문진국 · 김경협 · 전재수 · 김병욱 · 민홍철 · 서삼석 · 이상현 · 정성호 의원 발의)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권은희 · 이동섭 · 황주홍 · 이용주 · 김종로 · 김수민 · 신용현 · 채이배 · 이용호 · 김관영 의원 발의)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 원 대표발의)(김관영·김삼화·임재훈·박선숙·김수민·주승용·이동섭·유동수·엄용수·채이배 의원 발의)
- 3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윤종필·김선동·나경원·김현아·원유철·임이자·윤한홍·주호영·유재중 의원 발의)
- 3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 3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기동민·전재수·금태섭·남인순·민홍철·김병기·한정애·윤호중·김병욱 의원 발의)
- 3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임이자·윤재옥·이채익·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승희·이은권·김성원·이언주 의원 발의)
- 3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조정식·김수민·김세연·박성중·유승민·김삼화·박덕흠·유동수·이언주·홍철호·권은희·김철민·윤영일·박홍근·황희·박완수·송석준·강석호·강훈식 의원 발의)
- 4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4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이찬열·김영진·윤관석·이수혁·윤영일·전재수·김현권·김민기·윤후덕·이석현 의원 발의)
- 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 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임이자·경대수·김종석·정태옥·홍문표·김용태·박성중·김성원·김무성·신보라·민경욱 의원 발의)
-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박정·권칠승·정인화·송갑석·백혜련·최재성·김정우·정동영·김영호·윤준호·고용진·강훈식·금태섭 의원 발의)
-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정갑윤·성일종·박덕흠·김기선·박완수·안상수·윤영석·이채익·추경호·김재원 의원 발의)
-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김종희·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81)
-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김종희·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84)
-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현권·정세균·김병기·강훈식·이후삼·김영진·안호영·김철민·우원식 의원 발의)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재현·홍의락·이종걸·최인호·고용진·임종성·황희·이개호·조승래 의원 발의)
-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 5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헌·안호영·조승래·윤준호·홍익표·황희·김해영·전재수·이후삼 의원 발의)
- 5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박맹우·추경호·주광덕·김석기·곽대훈·박대출·조경태·권성동 의원 발의)
- 5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5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57.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박완수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이종명 · 김도읍 의원 발의)
5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59.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6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6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안호영 · 고용진 · 정세균 · 황주홍 · 원유철 · 추미애 · 한정애 · 최인호 · 박범계 의원 발의)
6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윤준호 · 백재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황희 의원 발의)
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6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윤종필 · 김선동 · 나경원 · 김현아 · 원유철 · 임이자 · 윤한홍 · 주호영 · 유재중 의원 발의)
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66.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정우택 · 이철규 · 이종배 · 이채익 · 김규환 · 윤한홍 · 이진복 · 곽상도 · 김석기 의원 발의)
6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신경민 · 이인영 · 홍익표 · 박광운 · 인재근 · 이훈 · 안민석 · 윤관석 · 설훈 의원 발의)
6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안호영 · 백재현 · 유승희 · 송기현 · 최인호 · 이종걸 · 고용진 · 김민기 · 박주민 의원 발의)
6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석기 · 추경호 · 김규환 · 정갑윤 · 곽상도 · 김상훈 · 유재중 · 조경태 · 정진석 의원 발의)
7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7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윤재옥 의원 발의)
7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7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7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윤재옥 의원 발의)
75.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정재호 · 송갑석 · 김성환 · 홍의락 · 강길부 · 박정 · 권칠승 · 박범계 · 우원식 · 강병원 · 신창현 · 김성수 · 최인호 · 위성곤 · 한정애 의원 발의)
7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7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 김정재·엄용수 의원 발의)
7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현·안호영·조승래·윤준호·홍익표·황희·김해영·전재수·이후삼 의원 발의)
7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8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현·윤준호·박범계·전재수·김해영·이후삼·이학영·박재호·안호영·강훈식 의원 발의)
8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위성곤·안호영·유동수·서삼석·박정·백재현·서영교·김두관·심기준·노웅래·윤준호 의원 발의)
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성일종·김광립·강석호·박명재·이채익·이진복·김종석·김현아·신상진·김재경 의원 발의)
8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85.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상훈·이진복·박성중·김승희·박완수·주광덕·윤종필·박맹우·최교일 의원 발의)
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정우택·이철규·이종배·이채익·김규환·윤한홍·이진복·곽상도·김석기 의원 발의)
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종희·박주현·송갑석·심상정·유성엽·이찬열·장정숙·정인화·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승희·유기준·김영우·김상훈·김정훈·김수민·정유섭·김기선·강석진·유민봉·심재철 의원 발의)
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강훈식·백재현·김병기·이인영·김영진·김진표·윤관석·윤준호·유승희 의원 발의)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현권·정세균·김병기·강훈식·이후삼·김영진·안호영·김철민·우원식·홍의락 의원 발의)
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현·윤준호·박범계·백재현·전재수·김해영·이후삼·이학영·박재호·안호영 의원 발의)
9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9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김도읍·박덕흠·이은권·주호영·원유철·이명수·정우택·박맹우·유민봉 의원 발의)
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9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9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9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이상현·김두관·김해영·백재현·유동수·김경협·송옥주·윤관석·최인호 의원 발의)
9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김재경·송석준·유기준·조경태·김도읍·윤영석·추경호·윤상현·이양수·이진복·김상훈 의원 발의)

- 9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전혜숙·김철민·황희·위성곤·박정·박광온·서형수·이석현·신경민·김해영 의원 발의)
- 10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 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이철규·이만희·김상훈·곽대훈·박완수·이헌승·김성원·이은권·송석준 의원 발의)
- 10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영교·박찬대·박정·이찬열·송영길·정유섭·윤관석·민경욱·신동근·홍일표 의원 발의)
- 10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주호영·김세연·권성동·김선동·이종배·추경호·김정재·박인숙·안상수·박덕흠 의원 발의)
- 10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종명·곽대훈·조배숙·장석춘·조원진·박완수·김선동·이주영·신상진 의원 발의)
- 1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유기준·김수민·김승희·김성찬·박맹우·김영우·이주영·송연석·문진국 의원 발의)
- 10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우원식·박정·황희·여기구·이원욱·권철승·김영호·김병관·설훈·송갑석 의원 발의)
- 10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승희·김수민·임

이자·김선동·민경욱·이은권·이종배·이종명·이동섭·곽대훈 의원 발의)

- 10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상현·윤준호·박범계·전재수·김해영·이후삼·이학영·박재호·안호영·강훈식 의원 발의)
-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김현권·우원식·백재현·홍의락·송갑석·이학영·박정·최인호·송옥주 의원 발의)
- 11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권은희·황주홍·이용주·김종로·김수민·신용현·채이배·이용호·김관영 의원 발의)
- 1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이동섭·정우택·박선숙·이찬열·송기현·신창현·서삼석·김철민·박정·최운열 의원 발의)
-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재현·이종걸·최인호·홍의락·고용진·임종성·황희·이개호·조승래 의원 발의)
- 113.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김영진·권철승·심재권·전해철·안호영·고용진·최인호·홍익표·윤관석·김진표 의원 발의)
- 1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송갑석·원혜영·정동영·금대섭·강길부·김성환·박정·유승희·우원식 의원 발의)
- 1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박정·박재호·김철민·김현권·설훈·김종민·홍문표·윤영일·정성호·이찬열 의원 발의)
- 1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송갑석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김병기 · 이석현 · 송영길 · 김철민 · 윤호중 · 정성호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60)
1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안호영 · 백재현 · 유승희 · 송기현 · 최인호 · 이종걸 · 고용진 · 김민기 · 박주민 의원 발의)
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추혜선 · 송기현 · 김철민 · 윤준호 · 서영교 · 김경협 · 박재호 · 김진표 · 김성수 · 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7307)
1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이찬열 · 이동섭 · 김종회 · 김삼화 · 최도자 · 하태경 · 신용현 · 강길부 · 조정태 의원 발의)
1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종회 · 전재수 · 오제세 · 전해숙 · 박재호 · 임종성 · 안규백 · 김철민 의원 발의)
12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송갑석 · 박정 · 위성곤 · 백재현 · 권철승 · 박범계 · 어기구 · 송기현 · 이원욱 · 박재호 의원 발의)
12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훈 · 이상현 · 송갑석 · 금태섭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김병기 · 주승용 의원 발의)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규희 · 송갑석 · 한정애 · 추미애 · 김병기 · 이훈 · 이상현 · 윤후덕 · 백혜련 · 박재호 · 남인순 · 주승용 의원 발의)
1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 · 김현권 · 우원식 · 백재현 · 홍의락 · 송갑석 · 이학영 · 박정 · 최인호 · 송옥주 · 기동민 · 김정우 의원 발의)
13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추경호 · 주호영 · 윤종필 · 민경욱 · 홍문표 · 김성찬 · 원유철 · 박맹우 · 곽대훈 · 김영우 · 박덕흠 · 송희경 의원 발의)
1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 · 위성곤 · 김해영 · 송기현 · 박홍근 · 유승희 · 박정 · 최인호 · 이찬열 · 전재수 · 홍의락 의원 발의)
1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서삼석 · 김종민 · 어기구 · 송갑석 · 권철승 · 이규희 · 위성곤 · 정태옥 · 김종훈 · 김철민 의원 발의)
1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추경호 · 성일종 · 윤영석 · 김규환 · 강석호 · 이종배 · 김정재 · 송언석 · 김성원 의원 발의)
136.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박완수 · 박덕흠 · 추경호 · 조훈현 · 윤영일 · 김현아 · 유의동 · 송언석 · 박명재 의원 발의)
137. **소상공인기본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김종석 · 황주홍 · 이찬열 · 이철규 · 김중로 · 성일종 · 하태경 · 김영우 · 조정태 의원 발의)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김종석 · 이찬열 · 이철규 · 황주홍 · 김중로 · 성일종 · 하태경 · 김영우 · 조정태 의원 발의)
1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백재현 · 김영진 · 박찬대 · 박영선 · 표창원 · 이춘석 · 김현권 · 임종성 · 정세균 · 정성호 의원 발의)

1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 · 송옥주 · 이상현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박광온 · 김철민 · 유동수 · 황희 의원 발의)

1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신용현 · 김수민 · 김삼화 · 김중로 · 손금주 · 김동철 · 주승용 · 김관영 · 박주선 · 최경환(평) 의원 발의)

1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

표발의)(송갑석 · 정세균 · 홍익표 · 이원욱 · 권철승 · 이훈 · 백재현 · 설훈 · 홍의락 · 우원식 · 김성환 의원 발의)

14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

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김중회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의원 발의)

1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 · 황주홍 · 김중회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의원 발의)

1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우원식 · 인재근 · 김현권 · 김영진 · 윤후덕 · 설훈 · 오영훈 · 이학영 · 표창원 · 추혜선 · 송갑석 · 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72)

14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우원식 · 전해숙 · 윤후덕 · 이원욱 · 제윤경 · 강병원 · 김성환 · 홍의락 · 김현권 · 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46)

1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정세균 · 홍익표 · 이원욱 · 권철승 · 이훈 · 백재현 · 설훈 · 홍의락 · 우원식 · 김성환 의원 발의)

1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

영 · 강훈식 의원 발의)

1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

표발의)(황희 · 박재호 · 남인순 · 전해철 · 심재권 · 민홍철 · 정재호 · 김진표 · 김영진 · 신창현 의원 발의)

1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

의)(이종배 · 김상훈 · 곽대훈 · 유재중 · 이채익 · 金成泰 · 이은권 · 김명연 · 주호영 · 성일중 의원 발의)

1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

의)(박범계 · 백재현 · 이종걸 · 최인호 · 홍의락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14시14분)

○**위원장 홍일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2항까지 총 1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상정된 법률안을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와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현행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돼 있고 승인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 혜택 또한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마저도 법의 유효기간에 따라 올해 8월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을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본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만큼 아무쪼록 본 법률안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보증·대출을 받은 실적’ 대신 ‘혁신성·성장성’으로 바꾸는 등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육성하려는 것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흩어져 있는 벤처투자제도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맞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벤처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8월 만료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법의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산업 외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다수의 승인기업이 고용·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 기업 활력을 회복 중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원활하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의 적용범위를 정상적인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확대할 경우 상법 및 공정거래법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용 태양광 등 일반용 전기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의 상계거래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만 상계거래 현금정산이 가능함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자가용 전기설비와 차별할 이유가 없고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계거래 현금정산은 전력시장 외 거래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자가용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장 외 거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활용하고 그 이용 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냉열에너지 및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냉열에너지 이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해 사업자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게 하고, 천연가스를 자가소비하거나 자회사 등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는 한편 전주기적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적 측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능적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의 폐지는 국내 광물자원 수급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률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율이 낮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총괄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 등을 유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추진계획의 명칭 및 그에 포함될 내용은 두 의원안이 다소 상이하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유자 개인에게 갱신등록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공유상표권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자 중 일

방 당사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갱신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갱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호** 전문위원입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인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여 현실적으로 공동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세부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명확한 허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적용 배제 조항을 특정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유통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환경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판로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관련 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권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기술자료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취지, 과도한 규제에 의한 수·위탁거래의 위축 가능성, 하도급거래에도 적용되지 않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및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벤처투자제도에 관한 사항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 규정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제도와 변경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투자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투자제도를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투자 제한 완화로 인하여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지원과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관련 조항에서는 매각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각 대상기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토론에서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4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님.

○여기구 위원 충남 당진 출신 여기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의락·송갑석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몇 항이지요?

○여기구 위원 24, 25항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24, 25?

○여기구 위원 예.

산업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여기구 위원 얼마 전에 어렵게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지요? 차관님께서서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건하에서 노사민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지요?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특위도 만들어지고 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까지의 확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와 관련한 법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지난 2월 21일인가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내역을 보면 국공유지에 대한 지원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유지에 대한 지원.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 업종을 보면 제조업도 있지만 서비스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 업종을 지원할 때, 이것을 감안할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 재산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구 위원** 대상 업종이 지금 서비스업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공유지에 한정하게 되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공유 재산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절실히 보이거든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또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중소기업·중견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기업도 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것도 일정 부분 요건이 맞다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위원** 새로 신설되는 법인들에 한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법인세 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연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소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법을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최근에 행안부에서 관련법 통과시킬 때 다시 산업부 의견조회를 했었고요. 저희가 사회적 재난으로 저희 입장을 수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이언주 위원** 수정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보니까 작년 12월에 다른 부처와는 달리 산업부에서는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 중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여섯 기를 LNG로 전환하겠다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깐 정부 출범 당시에 일곱 기 중에 세 기는 이미 착공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네 기는 남아 있었는데 이 네 기를 정권 출범 이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공약 위반이고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알고 있습니까? 아셔야 되지요,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이언주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신규 발전소의 도입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여섯 기는 LNG로 전환을 시켰고, 여러 가지 절차 진행상……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곱 개가 신설 계획이 있었고 그중에서 세 기는 이미 착공이 돼 있었지만 나머지 네 기는 착공이 안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대로라면 신설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18년 3월에 네 기를 착공을 이미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중단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것은 발전사업 허가와 그다음에 공사계획 인가가 이미 나가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화된 석탄, 특히 30여기 이상이 지금 수도권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 기도 사실은 이미 착공이 됐다 하더라도 완공되기 전이라면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중단시켜서 무효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은 그 네 기를 갖다가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착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작년엔. 이것은 공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하세요, 이것 어떻게 할 건지요.

그다음에 제가 LNG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LNG가 수입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백업용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LNG가요? 그런데 LNG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신·재생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신·재생이지 태양 같은 경우에도 저녁 때 해가 지고 나면 간헐성 때문에 사실은 LNG로 백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이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괄호 열고 플러스 LNG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신·재생의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기에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LNG와 같은 백업 설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재생 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래서 LNG도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LNG와 석탄을 비교를 한다면 LNG가……

○이언주 위원 아니, 석탄하고 비교하라는…… 누가 석탄 늘리라…… 석탄도 중단하고, 그런데 왜 LNG는 늘리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석탄보다는 상대적으로 LNG가 친환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언주 위원 그건 상대적인 얘기고 탄소 배출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미세먼지 배출은 8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3분의 1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지금 그렇게 비교를 석탄…… 누가 석탄을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석탄해야지, 그것 지금 안 한다고 제가 아까 문제 삼은 거잖아요. 탈석탄하기로 해 놓고 안 하니깐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석탄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고 해서 LNG를 지금 강변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문제가 있지요. LNG도 문제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해야지요. 그

래서 신·재생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재생 팔호 열고 LNG 같이 얘기해서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에너지전환 정책을 석탄과 원자력의 감축 그리고 신·재생과 LNG의 확대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얘기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게 병행이 가능한가,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갈 게 아닌데?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요.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강원 동해시삼척시 이철규 위원입니다.

정승일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이철규 위원** 광업공단법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이것 정부 생각이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하고 동일합니까? 정부 생각입니까, 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정부 생각이기 이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의 자원개발혁신 TF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이런 방식의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정부도 그 의견에 동의한 사안입니다.

○**이철규 위원** 정부가 동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정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니,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의 조그마한 수익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광해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연간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광물자원공사의 금융비용만 해도 1000억이 돼요. 같이 부실화시키는 것이고 설립 목적이 다른 겁니다.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광물과 연관됐다 해 가지고 두 기관을 통합시

켜서 정부가 그 부담을 특정 지역에 떠넘겨 버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다른 대안을 빨리 마련하세요. 이 법안 통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좀 답변드릴까요?

○**이철규 위원** 예, 그러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대안이 있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광해공단의 자산이나 어떤 그런 계정에 있는 부분들을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털기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계정을 분리해서 광해공단은 광해공단대로,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공사대로 저희가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다만 통합의 효과는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제표가 일부 개선되고 또 법정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외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좀 경영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차관님,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하러 통합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국민 속이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정부가 1조 증자해 가지고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상계시키려고 했는데도 그 당시 여당의 반대로 안 됐어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금 문제입니다.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이철규 위원** 지원금을 지금 일정한 기간 내에 다 쓰도록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이철규 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하겠다고 모으고 있는데 그걸 그 당해 연도에, 지정된 연도 내에 다 안 쓴다고 환수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여러 개 지자체별로 배정된 한 14억 정도가 지금 쓰지 않았다, 집행하지 않았다고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들어서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

해서 일부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을 지역주민들이 그냥 써 버리고 말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의 주민들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몇 년씩 모아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환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고 그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환수 통지한 것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걸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의 의무채용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구 의원님께서 이걸 의무화하는, 임의채용에서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경 5km,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행정구역 단위로, 같은 행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시에 30km씩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지역에 포함시켜서 채용의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기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철규 위원** 30초만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홍일표** 예, 1분……

○**이철규 위원** 우선채용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피해도 없는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수혜를 확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9항부터 34항까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니까 말씀하실 때 몇 항 법안에 대한 것이 다라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이철규 위원님은 75항을 하셔 가지고 속도위반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뒤에 조금 연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날씨가 옛날 우리말로 꼬물꼬물하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이게 미세먼지예요, 물안개예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미세먼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래요? 이거 우리에서 다 발생된 것일까요, 다른 데서 왔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환경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한 30~50% 정도가 국외……

○**김규환 위원** 이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서 여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농해도 있고, 다 이렇게 생겼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평상시에는 30~50% 정도가 국외 요인이고 고농도 시에는 한 60~80% 정도가 국외 요인으로 환경부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혹시 그러면 중국인지 몽골인지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김규환 위원** 확인 안 해 보세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안 알아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것을 위해서 관련국들과 공동조사 내지는 공동연구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렇지요? 특히 몽골 쪽 주변을 해 주셔야 될 게 페타이어 태워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폐암이나 폐질환이 많은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폐결핵 병원을 그쪽에 많이 지어줬다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것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확실히…… 우리

가 미리 사전에 이것을 발생된다고 막 야단만 칠게 아니고 어디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 오늘 같은 날 태양열로 얼마나 전기가 발생할까요? 안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쾌청한 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발전량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이런 날이 365일 같으면 며칠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이 안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김규환 위원 앞으로 계속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태양열도 무용지물이겠지요? 태양열 하기 전에 이런 날씨를 깨끗하게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환 위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국민들한테, 계속 이런 날에 하면 아무리 좋은 태양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보다 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겠다, 대체 태양열이라는 전력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태양열은 태양광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규환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태양광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법안이 상정이 안 돼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다음에 하시고.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산업부가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독일이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지요. 독일이 2022년이면 독일 내 원전 전체를 다

셋다운 시키지요? 탈원전 해가 2022년인 것 알고 계시지요? 대략?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한 번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환 위원 독일이 석탄은 언제 중단시키는지 아십니까, 석탄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은 203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세계에서 산업경쟁력이 가장 강한 독일이 원전도 안 하고 석탄도 안 하면 뭘로 에너지를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재생에너지 비율을 아마 50% 정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나머지는 뭘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일부 외부 송전망을 통한 급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LNG 발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위원 최근에 영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같은 런던 스모그가 심각했지요. 런던 스모그가 심각해서 석탄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원전을 좀 늘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히타치가 영국에서 3조 원 정도 규모의 손실을 보고 원전 철수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김성환 위원 왜 철수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영국 정부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국이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북해에 풍력을 매우 빠른 속도로 늘립니다. 그리고 원전을 보완재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북해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풍력은 밤에도 들쭉아요, 바람만 불면. 그러니까 간헐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태양광에 비하면. 그래서 당초의 발전 목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굳이 위험한 원전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원전에 대한 보조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히타치가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

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사업구조가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성환 위원** 사업구조가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풍력발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굳이 원전을 하지 않아도 영국 내에 석탄 발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원전은 위험해서 그만 지어야 될 것 같고 석탄발전소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석탄발전소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연주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태양광 간헐성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원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발전소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과 지구의 안녕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탈원전·탈석탄을 동시에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 추세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잘 알려야지요. 그게 잘 안 알려지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재생에너지의 속도를 내야지요. 특히 상대적으로 간헐성이 낮은 풍력 이런 것에 대한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덴마크에 갔더니 석탄발전소를 바이오매스발전소로 바꿨습니다. 그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바이오매스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사례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오늘은 법안 대체토론 시간이니

까 논의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차관,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한데 동의하셨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자료도 제시해 주세요. 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 말씀은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원전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데 동의하셨잖아요, 탈원전이.

하여간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 한다고 제시해 주세요. 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위원장 홍일표**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저도 김성환 위원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산업부가 좀 더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화석연료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지양해 가야 되는 것이고 원전은 위험하다,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 관리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산업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RE100을 선언한 기업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우원식 위원** RE100 선언이라는 게 뭐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원식 위원** 글로벌 기업이 몇 개 나라가 그것을 선언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나라는 잘 모르겠고 기업……

○**우원식 위원**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우원식 위원** 122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 글로벌 기업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베스트라스 이런 세계적인 기

업들이 다 하고 있고 또 이 기업들은 이것이 지금 그 기업의 자체적인 선언입니다마는, 우리 기업은 전부 다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협력회사에게도 RE100을 하지 않으면 물건 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앞으로 산업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장서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도 만나봤는데 삼성 전자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RE100 선언하고 싶은데 외국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는 다 지금 RE100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사인 국내에 있는 기업이 전체 전기의 60%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RE100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RE100 선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RE100을 선언해야 되는데 빨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덴마크 갔었습니다. 덴마크에 갔더니 해상풍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여기 데이터센터가 덴마크로 갑니다. RE100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미국까지 이 데이터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광케이블을 대서양 지하로 깔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원전이니 화전이니 이야기하는 이런, 에너지의 쇄국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산업부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위험해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산업부가 이 법안을 다룰 때 그리고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조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금 세계적 트렌드이고 저희가 반드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산업경쟁력뿐만 아니고 국내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RE100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우리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믹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2040년까지의 비전도 조만간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RE100 선언한 기업이 122개의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게 머지않아 우리한테 닥쳐올 문제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법안이 125번, 126번인데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홍일표 지금은 조금…… 좀 이따가……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제가 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탈원전 시작할 때 그 당시 장관께서 미국 자료를 들고 와서 ‘단가가 싸다’, 그때 항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제가 그때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덴마크를 이야기하고 노르웨이를 이야기하고 스위스를 이야기하고 영국을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자연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 나라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백운규 장관이 미국 태양광 발전단가를 가져와서 그 가격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원자력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 그런 항변을 할 때 우리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미국 자료를 여기다 적용을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세먼지가 중국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환

경부 자료가 있다고 차관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탈원전을 중국 가서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 동해안에 원자력발전소 몇 개지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38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원전 말씀입니까, 석탄 말씀이신가요?

○**윤한홍 위원** 원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원전이요?

○**윤한홍 위원** 예, 중국 동해안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제가 정확히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중국의 석탄발전소 발전 설비량이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석탄발전소는 한 3000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옛그제 언론에 보니까 발전 설비량이 980GW라고 내가 봤습니다. 980GW의 석탄발전소를 중국에서 운영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발전 피크 때 발전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94GW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80GW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GW 정도……

○**윤한홍 위원** 아니지요, 90GW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계획서는 88GW인데 실제로 사용량은 94GW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차 수급계획이 엉터리다 하는 비난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피크 때 전력수요가 94GW 정도 올라가는데 중국의 석탄발전 설비가 980GW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말을 못 하지만 이 정부가 가서 그래야 돼요, '석탄발전소 돌리지 마라.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원자력발전소로 가잖아요. 중국은 지금 공기청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베이징 하늘 맑게 하느라고 전부 원자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석탄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가서 석탄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줄이라고 할 겁니까?

아까 전에 차관님 답변하셨잖아요. 미세먼지 심할 때는 60% 이상이 중국 원인이라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국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한홍 위원** 국외 원인이 중국이지, 여기서 말장난할 건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몽골 요인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 참 태평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스럽습니까?

그러면 중국 가서 한진 사장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자력 때지 말라고 할 겁니까, 석탄 때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 나라의 자연환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으로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이 감당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인구 500만 되는 도시를 매년 예를 들어 가면서, 스위스나 노르웨이 가면 수력발전소가 거의 100% 되는데 그런 예는 왜 안 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윤한홍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을 내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산업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산업에 있어서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스톱시켜 놓고, 지금 창원에 두산중공업이 그 밑에 원전 협력업체가 300개가 가까이 되고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교대로 무급휴직, 유급휴직 하고 있어요. 갑자기 세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점진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산업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세워 본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창원에서 원전 협력업체들이 죽는다고 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렇게 태평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일표** 위원님.

○**윤한홍 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홍일표**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 어렵던 액법도 정말 만장일치로 아주 전광석화처럼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가 국외 원인이 60%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고농도일 때……

○조배숙 위원 국내에서 40%고 또 국내에서도 원인을 보면 산업발전이 40%, 교통에서 유발되는 게 40%, 일상생활 20%,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석탄화력발전은 저도 반대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을 앞으로 계속 증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풍력의 경우에 우리는 영국이나 덴마크처럼 바람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정말 바람의 질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피크를 94GW 기록했는데, 지금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상되는 전력수요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야 되니까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를 하고, 그렇다 하면 전력수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다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요.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또 여기 한진 사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력수요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저희가 8차 전력수급계획이 지난해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2017년에 27%에서 2030년에 24%로 3% 떨어집니다. 석탄은 2017년에 43%에서 2030년에 36%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석탄과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도합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5.6%에서 20%로 15% 올라가고 그다음에 LNG발전이 약 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원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크게 감축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감축해 나가는 것이고 반면에 석탄은 원전보다 더 큰 폭으로 지금 발전량을 줄여 나가고 있

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유발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저희의 전반적인 전력수급상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의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9차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감축계획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과거에 짚던 계획은 속도가 늦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은.

제 얘기는, 아마 국민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메꿀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이 그렇게 아주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석탄이 줄어들면서 만약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백업이 필요하다면 LNG발전의 증가로 충분히 그것을 메꿔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LNG는 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게 불을 보듯 뻔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사실 탈원전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래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 유념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에 첨언하면 원전과 석탄의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비용, 지금 현재 발전단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비용들을 저희가 추가로 감안한다 그러면 발전의 비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LNG와 비교했을 때 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환경비용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 안 하시고 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 논쟁은 적절하게 접어 주시고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시든지 이렇게……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석탄 발전소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을 거고 석탄에너지 설게 변경을 좀 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못 만듭니까? 지난번에 한국기술 주식회사 사장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석탄을 돌리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보일러나 터빈 같은 주기기하고 그다음에 탈질·탈황 설비들을 보완하면 미세먼지는 한 60% 이상, 그다음에 온실가스는 한 10~15% 이상 더 감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현재 석탄화력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노후석탄에 대한 폐지와 전환도 하지만 아직 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

한수원 사장님, 발전사하고 협의해서 그와 관련된, 전력을 생산하지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들을 투자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예, 그런 것을 9차 계획에 종합적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자꾸 계획상으로 미루고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현 시점이니까, 이것은 기술이 어디까

지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한전 기술주식회사 사장한테 듣기로는 아까도 차관 얘기한 것처럼 60% 이상은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지금 한전은 발전사들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을 탈황·탈질 설비 개선을 비롯해서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부한테도 저희 안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9차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검토하고 9차 계획하고 10차 계획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1~2년 안에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느낌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발전량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없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탈황 설비라든지 미세먼지 적게 나올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거기까지는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깐 거기부터 먼저 가야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정책적인 실사구시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 불안을 좀 덜어내는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도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석탄발전의 원천적인 신규 진입 금지라든지 노후석탄의 폐지 그다음에 LNG로의 가동·전환 또 상한제약 80%씩 거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봄철과 겨울철에 시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석탄발전소에서만 미세먼지가 배출량이 25% 정도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다양한 기술도

적용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최대한 적용해서 미세 먼지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예, 그러시지요.

박맹우 위원님.

○박맹우 위원 산업부차관님,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의문이 하나 생겨서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새만금 태양광 사업 4GW 하겠다고 직접 발표를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지금 전체 4GW가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단계별로 그다음에 일부 구역별로 나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진전이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예타라든지 이런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추진은 부분적으로나마 하고는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수원이 주도가 돼서 하는 0.3GW 정도의 사업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일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영역도 있고……

○박맹우 위원 내가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때 발표에 의하면 4GW 해서 원전으로 환산해서 원전 네 기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했지요.

거기서 우리 이제 이미 많이 드러난 상식만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태양광발전은 평균 3시간 정도 보지요?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3시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3 \times 8 = 24$, 그게 8분의 1입입니다. 그렇게 치면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0.125GW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또 수명을 원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원전은 지금 60년,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까지 가는데 통상 한 15년으로 보고 거기서 또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0.03GW 정도의 계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산술이 나옵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장황하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국민들에게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상 10조 들여서 매립해 놓고, 10조 들여서 태양광발전을 해서 0.03GW 발전을 하겠다, 발표를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새만금 지역 발전소……

○박맹우 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그 계획대로 다 한다면 패널이 한 1100만 개에서 1200만 개 소요된다고 하는데 발전 용량은 그렇다 하더라도 1100만 개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중간에 한 번 세척을 해 주려고 하더라도 1100만 개를 어떻게 세척하겠습니까? 그리고 용량이 끝나고 1100만 개입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10년~15년 되면 당장 그런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런 것 제대로 대책이나 세우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까?

그 처리 방법·용량,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우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활용계획이 당장 서 있는 그런 부지에다가 저희가 매립을 해서 그걸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한 20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거나 후순위 계획으로 밀려 있는 그런 부지에다가 저희가 이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패널의 20년 활용 후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그 재활용 계획 혹은 폐패널에 대한 처리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20년이 지났더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폐패널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20년 사용하고 20년 뒤의 폐기물……

○박맹우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내 얘기 해 놓고……

시간 좀 더 주시렵니까?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20년 쓰고 20년 후의 폐기물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원전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미국이 80년 정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0년 사용 후에 중저준위가 최소한 500년 이상, 사용후연료나 고준

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까지 그 폐기물을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선상에서 그런 전원들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용성과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차관께서는 방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얼마든지 기술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1000만 개, 2000만 개 용량이 됩니까? 그런 것들로 나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재생을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요. 공짜 태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분석을 안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마치 4GW, 원전 네 기가 생기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실지 됩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내가 투쟁하겠어요. 정말 그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법률들, 제35항에서부터 15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차관님, 한국광업공단법 이것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 이게 상당히 오래된 자료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 합병이 됐을 때 지금의 해외 자산과 관련된 처리 내용들을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쫓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예, 별도로. 이것은 여기서 하면 답변도 길고……

시차가 많이 지났고 또 광물에 대한 원가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로 풀어서 저희 방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경기 파주를 박정입니다.

우리 유턴법 있지요, 그래서 2013년에 법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몇 개나 들어왔지요? 유턴기업이 52개가 복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52개의 성과라서 그동안 정성을 들인 것에 비해서 미흡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체를 줄이거나 완전히 폐업을 해야만 유턴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유턴기업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들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박정 위원 뻔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투자 자본에 대한 다시 국내 유입, 그다음에 국내 시장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권칠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개정안이 제조업에서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광업이나 공연시설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지금 빠져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 범위가 한정적이지요.

그래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안정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지원이 가능한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유턴기업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서비스 기업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더 대폭적으로 관광업, 공연시설업 등 이러한 해외 투자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그동안 중기부 초대 장관을 맡으시면서 중기청이 중기부로 가는 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약자들이 강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교섭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그렇게 여러 기업이 모이다 보니까 부당한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것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사업이 가능한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공정거래법 상에도 적용 예외규정이 있기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외가 인정된 건은 1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법률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될 텐데, 지난해 3월에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 제외를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관님이, 중기부가 정말로 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에 대한 예외조건에 대해서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협동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쪽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조금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열심히 협동조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벤처투자 촉진법도 제정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박정 위원 그런데 장관님,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자가 꼽은 애로사항 1순위가 자금조달, 한 67% 3분의 2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 또 창업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에도 92%, 추가 자금조달 역시 자기 자금인 경우가 82%입니다. 대부분 자기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시중 부동자금이 한 1100조 정도 되고 있지요? 그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금 대부분 비중이 부동산 자산에 75.4%, 4분의 3이 몰려 있어요. 미국은 34.8%, 일본은 43.3%로 규모가 50%가 안 되고 한 30%, 4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부동산에 자금이 대부분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걸 벤처 투자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개인 투자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 다소 언성도 높일 정도로 해 가면서 1년 반 동안 계속 논의해서 입장을 조율했는데요. 수용한 건 결국 엑셀러레이터를 창투조합 결성 주체에 포함하는 것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대학 기술지주회사 형태로 개인투자조합 참여를 허용한 정도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잘하신 것은 제2벤처 붐 전략에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다가 벤처펀드 출자 시 다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 투자자를 1인 출자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고 또 보상 문제를 한다는 것은 계속 산자부도 그랬고 중기부의 입장이었는데 시중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는 시급성을 따져 보면 부작용보다는 사실은 이런 활성화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예방책은 만들되 좀 더 심도 있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동안은 고액 투자자만 가능했잖아요? 49명 이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인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번 대책에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도에 엔젤 투자수라든지 엔젤 투자액이 대폭 늘었지만 아직 2000년 수준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수용해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받으시는데 연금이 부족한 건 분명한가요? 그러니까 자꾸 창업으로 가시고 소규모 창업을 하시다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동산 이외에 방법이 없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벤치가 잘되게만 되면 벤처로부터 기본적인 연금 비슷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익금을 받고, 배당을 받고 연금이 있으면 충분히 자영업에 뛰어 들지, 모험을 걸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줄고 결국은 생태계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에 대한 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벤처 쪽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2벤처 붐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벤처 붐을 일으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하게 취지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하시고 우원식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산업부차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82항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한수원 정재훈 사장께 울산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사장님께서 정부와 협조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차관님, 울산 새울원전 대피도로 관련해서 한수원과 논의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직 저희가 논의한 바는 없었고요. 위원님 질의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강길부 위원 현재 새울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주민들이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군도 33호선이 사실상 유일한데 대규모 주거단지 또 신고리원전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막대한 교통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사업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차관님, 같은 여건인 영광원전 대피도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제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깐 지난 2012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2012년 12월 그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영광원전 지역 숙원사업 합의를 통해서 영광 법성에서 흥농 상하에 이르는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2차선도로 시설비는 국가가 용지보상비는 지자체가 4차로 확장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합의되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사업도 영광원전과 같은 형태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부처, 기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이 건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수원,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우선 총리실하고 관계부처하고도 차관님이 직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홍종학 장관님, 벤처기업 관련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그런 뜻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이나 아니냐를 중기부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민간에 넘기게 됩니다.

○윤한홍 위원 민간에 넘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지금도 현재 기보에서 대출을 해 주면 자동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문 정부 들어와서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세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윤한홍 위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추경에 거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8500억 들어갔습니다.

○윤한홍 위원 8500억, 1조 가까이 들어가고 또 올해 예산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한국 벤처투자하고 중기부에 몇 번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어느 벤처기업에 돈이 얼마나 갔느냐?’.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자가 됐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면 세금이 어느 벤처기업에 어떻게 가 가지고 어떻게 써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느 벤처기업에 그 많은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걸 완전 도덕성이, 모럴해저드도 극도의 모럴해저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어느 펀드에 돈이 간 것까지는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느 벤처기업에 얼마의 투자가 됐는지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공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맞지요, 장관님? 안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몇 번 했

었어요.

만약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만약 이 법을 바꾸려면 어느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자가 되고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꿉니까? 정부 세금이 몇 조가 들어가는데 이게 눈 먼 돈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간 어느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세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자료를 제공 못 한다 그걸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든지 어느 벤처기업에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걸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바꾸면 이것 완전히 세금을 그냥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벤처 인증기업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어느 벤처에 얼마만큼 투자가 됐는지 자료 주세요, 공개되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것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안 되잖아요, 이 법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 벤처 인증기업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기업에 투자한 모태펀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윤한홍 위원 그런데 어느 벤처기업에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자됐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안 나옵니다. 한국벤처투자 확인해 보세요, 장관님 가서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간에서 벤처기업 확인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2개가 양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차관님, 저는 중기부하고 같다고 보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들입니다. 지금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이 일거리가 다 떨어진다고 해

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합병 발표를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 협력업체들의 거래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에다가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아무 자료를 제출한 게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에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 방안을 중기부장관님 계신 동안에 마련해 주시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건 하셔야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저는 146번, 147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정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 나와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이 커다랗게 몇 가지 골자가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가 누차 얘기해 왔던 건데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자격을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면제를 하는가, 특허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변리사시험을 일방적으로 너무 특혜 주는 거다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냈어요. ‘특허행정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로, 관세사의 경우도 관세행정 분야로 폭넓게 업무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특허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이게 행정사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게 아니어서 저는 이것은 시험 면제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셔요.

그런데 정갑윤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상진 전문위원이 낸 것을 보면 전혀 반대예요. ‘국세행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근무기간만을 고려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등등 해서 ‘공무원에게 해당 시험과목 전체에 대한 면제 혜택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행정에 관해서는 면제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국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발의한 내용과 유사하게 유동수 의원이 지난 시기에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냈어요. 그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저는 감정 업무, 상담, 자문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비변리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동수 의원이 낸 것은 비변리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꼭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에게 전속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지난번 유동수 의원에게 낸 법안의 취지는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변리사의 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법안에 대해서 한 번은 그것을 막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무슨 입장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우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원식** 위원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 두 검토보고서를 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이 쓴 건데 처벌하자

고 할 때는 처벌하자고 해 놓고 이번에 금지하자고 그러니까 금지하지 말자고 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게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법을 낼 때마다 달라요, 이게.

특허청에 의견 물어봐 갖고 특허청 의견대로 해 주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입장을 한 사람이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회 전문위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내는 것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생긴 제도인데,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는 법안의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그리고 과거에 냈던 것하고는 또 정반대 입장으로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해명하세요.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는 위원님들 결정할 때 참고 사항이니까요.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에 꼭 얼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도 법안소위를 하는데 전문위원 의견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다루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제도를 뒤서 법안 검토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위에 해당하는 문제고 또 그것이 상당히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존중되어야 되고 그

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보고서 내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일관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한 사람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문위원제도는 국회가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홍일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는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제가 중기벤처소위기 때문에 중기벤처부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때 하기로 하고요.

아까 산자부 정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계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전이 무서울까요, 미세먼지가 무서울까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당연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크시지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위원 대통령께서 인도, 체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정상들 만나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아주 안전하다고 홍보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성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외국 정상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안전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자,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전력 발전량의 31%였는데 2년 후 2018년도에 23%로 줄었어요. 석탄은 2016년도 36%에서 2018년도에 43%로 늘었어요. 이게 뭐지요? 석탄 발전량을 늘린 거예요, 원전 발전량은 줄이고. 이게 미세먼지의 하나의 요인이고 이게 환경 파괴적 요인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석탄 발전량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비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이 31에서 23으로 준 이유는 2016년부터 시작됐던 원전에 대한 예방 정비 과정에서 9기가 철관 부식, 13기가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기간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원전 설비 비중이 준 게 아니라 가동률이 준 것입니다.

○**정유섭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이 발전량 자체가 줄었고요.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원전의 발전 비중이 줄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예.

○**정유섭 위원** 석탄의 발전 비중은 늘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석탄은 지난 정부에서 신규로 허가 받아서 새로 준공된 발전기가 11기입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미세먼지가 많아진 게 원전 발전 줄이고 석탄 발전 늘리니까 미세먼지 늘지요. 내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성윤모 장관한테 ‘2030년에 원전이 10%로 다운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겠지요.’ ‘새로운 에너지원 안 나오면?’ ‘그러면 석탄하고 LNG 해야지요.’

자, ‘석탄하고 LNG 해야지요’ 성윤모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안 나오면.

석탄하고 LNG 때면 미세먼지 많아지겠습니까, 안 많아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을 같이 감축하는 것이 그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탄과 LNG가 같이 는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원자력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면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

지다.’ 이것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방법이 지금은 원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자고 그러고 자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신·재생에너지 하고 원전도 하는데 지금 이 퍼센티지로 나와서, 원전 발전량은 줄고 석탄 발전량은 동일하게 늘어 버렸으니, 원전 발전량이 준 것만큼 석탄 발전이 늘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국민들이 불평하는 건데 이 수치를 얘기 안 하고 ‘석탄도 줄었고 원전도 얼마 안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왜 미세먼지가 늘어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원인은 차치하고 그냥 결과만 놓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상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원인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원전 비중이 23%로 작년에 떨어졌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함의 문제로 인해 생겼던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비를 통해서 보완이 되면 가동률은 다시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4년까지는 원전 설비 비중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작년, 제작년 때 우리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원전 가동률을 제발 좀 높여라, 원전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세우냐, 원전 가동률을 90%로 해 달라, 60%로 하지 말라.

원전 가동률 90% 하면 미세먼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춘 게 아닙니다. 그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이고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원전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정유섭 위원** 미세먼지가 왜 갑자기 많아졌느냐는 것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유발 요인은 전체 국내 요인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줄고 석탄이 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늘었다’ 그 주장에 저희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정승일 차관님, 결국 탈원전 하면 화력발전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요 멀리 봐야지요. 결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도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숫자로 제시를 하고 그때까지는 원전이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갈수록 이렇게 줄게 되면 화력발전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되고요.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다른 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관련해서.

한전 사장님 마이크 좀 주시지요.

지난해 적자 얼마입니까, 한전 적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영업 적자가 2000억 조금 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영업 적자 2000억?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예.

○이종배 **위원** 예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예년 평균 얼마였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그전보다도 한 5조 정도 준 셈입니다.

○이종배 **위원** 5조 정도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연료 가격 상승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정부가 각종 신·재생이라든지 MB 정부 때부터 해 오던 정부 지원 사업에 따른 정책비용이고……

○이종배 **위원** 또 원전 가동률 줄어든 것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원전 가동률이 그전보다도 준 것 때문에 작년엔 미친 영향은 18%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상당히 큰 요인이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 적자 예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지금 이게 상장기업으로서 CEO가 금년도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번의 2조 4000억 얘기는 뭐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그것은 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랑 발전사들이랑 자구 노력을 하면 상당 부분 줄어 들 수 있고 또 아까 정책……

○이종배 **위원** 어쨌든 발표된 것은 2조 4000억 이잖아요, 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장기 계획에서……

○이종배 **위원** 장기 전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부하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 문제 또는 농사용 전기 체제 개편 문제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지금 주택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한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경부하 조정의 문제도 업종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배 **위원** 농사용?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현재는 농사용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정할 대상으로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은 뭐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저희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것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언론에는 아마 그냥 어떤……

○이종배 **위원** 한전 계획이잖아요, 그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한전 계획으로 금년도에 농사용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금년도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여름 혹서기 누진제 완화해 가지고 손실 본 것 얼마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지난해에 저희가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이종배 **위원** 3600억?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예.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 그것 보전해 준다고 그랬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

○이종배 **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한전에? 그것 보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작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냥 없던 것으로 치는 겁니까?
한전이 요즘 적자가 많아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큰데 잘 경영을 하시고 정부하고 약속 했으면 그것 받는 노력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한전이나 또 특히 산업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원 배분상……

○**이종배 위원** 산업부에서 노력한 것 뭐 있어요?

정부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까, 정승일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정부 예산 제출된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종배 위원** 뭐 제출된 이후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제출된 이후입니다. 저희가 정부안을……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 예측해 가지고 그 이전에 합의해서 그런 계획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얼마라도 해 놓고 그 증감에 대해서는 국회 와서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하절기 한시 혜택 부분은 8월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 부분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차관 답변해 주세요. 한전 사장님은 앉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지금 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관 TF를 구성해서 현재 누진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름철 한시적인 어떤 폭염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인가를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체계 개편은 저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요금 체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 하던 대로 믿어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급격한 전원 변화가 없는 한 인상 요인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

○**위원장 홍일표** 예, 그러시지요.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일단은 존경하는 정유섭 선배님이 빌 게이츠 얘기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RE100 가입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 두산중공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탈원전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탈원전 얘기를 하시는데, 인식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나, 사실은 에너지전환 정책, 특히 원전을 줄여 가고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전이 앞으로 한 60년 이상 남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우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원전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탈원전이 시작된 겁니다. 왜? 원전을 안 지으니까.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그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줄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나 중소 부품업을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해체 산업 얘기도 하시고 업종 전환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힘 있게 잘 진행된다는 느낌을 저도 못 받고 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여튼 거기에 충실하게 지

금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해 오셨던 부분 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느냐’에 대한 단순한 물음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젠다는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힘 있게 추진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업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시고,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이훈 위원** 저는 장관님한테 드릴 말씀이 자 뭐……

사실은 소상공인기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본 위원회에서 공청회도 했었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죽 보니까 어쨌든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근거상 보면 소상공인하고 또 자영업자하고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이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법안만 새롭게 해서, 어쨌든 이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차이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약간 법률적 사각지대처럼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도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기본 법안을 고민하신다면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까지 좀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본법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두 가지 통계를 가지고 현상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 위원** 뿐만 아니고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한두 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전국 단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단체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기본 법안

을 마련하는 데, 어차피 마련할 기본 법안이고.

존경하는 이연주 의원님은 법안 내시면서 그동안에 이 법을 대체해 왔던 지원 법안 폐지 법률까지 내는 상황이면 어쨌든 이 시기에 야당 위원님들이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져야 될 기본 법안이면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와 관련한 전국적인 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들을 좀 들어 보셔서 기본 법안이 마련되는 데 정부에서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위원장 홍일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한전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예.

○**이종배 위원** 지난해의 적자를 분석하신 것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예.

○**이종배 위원** 아까 보니까 원전 가동률 저하 원인이 18%라고 그러셨는데 한전에서 분석한 그 자료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예.

○**이종배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박정 위원** 잠깐 질의……

○**위원장 홍일표**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아까는 법안 상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지금 다 우려가 많으신데 산업부가 사실은 환경부에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빨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동풍이 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편서풍이 부는데 동풍이 불어서 우리의 먼지도 중국으로 갔다, 한 20% 정도는 그렇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대통령이 되시면서부터의 공약

이었고 또 2017년에 한중 정상회담을 국빈 방문으로 가셨을 때도 언급을 이미 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은 양국이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또 2018년 3월에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셨을 때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자, 두 나라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18년 11월 17일이지요, APEC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실제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양국이 협조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양국이 협력을 약속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이 많이 없었다. 최근에 물론 환경부장관이 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 이런 것을 반박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나라 국민 간의 감정으로 사드처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이것이 꼭, 중국에서 영향이 있는 것은 알지만 대체적으로 다 중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중국 사람들 특유의 체면에 대한 손상이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들은 것으로는, 중국에서부터 오는 원인도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국민 간의 감정이 심화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논의를 하고, 인공 강우탄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전에는 인공 강우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30만 원 정도 된다니까, 하나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물어봤을 당시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요즘은 그런 기술이전 등등 협조적인 것을 많이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중국을 가서 하늘에서 보니 초원에 잔디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 잔디가 어떻게 겨울에 살 수 있지’…… 더 자세히 봤더니 거기다가 부직포를, 그러니까 일종의 면을 전부 다 덮어 놓았어요, 천을.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만한 데에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도, 최근에 중국이 2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심해서 거의…… 차보다도 애가 중요하니까 차를 거리에 버려 버리고 어린이병원에 뛰어들어 갈 정도로 해서 교통마비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불과 2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처럼 우리가 강압적으로 석탄을 못 때게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중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 있을 것이고, 우리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상 파트너로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잘 듣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하고 이런 노력을 환경부만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부 분야 협력을 주로 환경부·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산업부도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사실은 소극적이거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전체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의 40%에 해당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함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라든지 사업장 총량관리 같은 이런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함께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그런 형태의 정책 발표를 통해서 수송 부분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감축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원이 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우리 산업부차관님, 다른 게 아니고요 영흥발전소하고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홍의락 위원 그런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기준이 영흥발전소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당진발전소는 그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적용 기준은 제가

알기로 같고요. 다만 영홍 1·2호기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배출 농도가 높고 영홍 3·4·5·6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배출……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환경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수도권하고 당진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런데 그게 지금 법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등에 대한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배출총량에 대한 관리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고 기타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확장이 됩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당진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석탄발전소는 배출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홍의락 위원**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만 더 특히 총량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게 충청권, 동남권 등등 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도 총량 관리하는 형태로 법 개정안이 지금 아마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총량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가지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수도권만 되고 수도권 외에는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총량 관리도 지금 법 개정이……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세먼지 심했을 때 인천시가 세계 1위였다 이런 통계가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홍 1·2호기가 옛날에 지은 것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탈황·탈질시설, 개선된 그 시설이 좀 거기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래서 영홍 1·2호기는 올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세계 최고 수준의 탈질·탈황설비를 지금 개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앞으로 하여간 시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현재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부도 거기에 대해서 국정에 무게를 두어서 잘 노력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더 하실 게 없으세요?

○**정유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국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강길부	곽대훈	권칠승	김관영
김규환	김삼화	김성환	박맹우
박범계	박정	백재현	송갑석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한홍
이언주	이종배	이철규	이훈
정우택	정유섭	조배숙	최인호
홍의락	홍일표		

○**청가 위원(2인)**

김기선 이용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전문위원	박장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관	정승일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산업정책실장		유정열	
산업혁신성장실장		박건수	
무역투자실장		박태성	

정 책 기 획 관	전	윤	중	한국광해관리공단	이	청	룡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강	경	성	이 사 장			
제조산업정책관	최	남	호	한국 전력 거래 소	조	영	탁
지역경제정책관	안	성	일	이 사 장			
중견기업정책관	조	영	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	희	봉
에너지혁신정책관	이	용	환	부 이 사 장			
자원산업정책관	김	정	회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정	진	수
원전산업정책관	신	희	동	대 표 이 사	주	형	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황	수	성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자유무역협정정책관	김	정	일	대 표 이 사	김	병	근
국가기술표준원	박	정	욱	(재)신용보증재단			
제품안전정책국장	김	용	채	중 앙 회 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장	홍	중	학	【보고사항】			
차	김	학	도	○의안 회부			
기획조정실장	김	영	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중소기업정책실장	조	봉	환	대표발의)			
소상공인정책실장	이	상	훈	(2018. 11. 28. 권칠승·이상현·김두관·김해영·			
정 책 기 획 관	변	태	섭	백재현·유동수·김경협·송옥주·윤관석·			
중소기업정책관	이	준	희	최인호 의원 발의)			
성장지원정책관	원	영	준	11월 29일 회부됨			
창업진흥정책관	권	대	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벤처혁신정책관	오	기	웅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기술인재정책관	김	영	태	(2018. 11. 29. 성일종·추경호·주호영·윤종필·			
소상공인정책관	김	형	영	민경욱·홍문표·김성찬·원유철·박맹우·			
특허청				곽대훈·김영우·박덕흠·송희경 의원 발의)			
청	박	원	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기획조정관	강	경	호	(2018. 11. 29. 정유섭·임이자·윤재욱·이채익·			
산업재산정책국장	박	호	형	정우택·박맹우·김기선·김승희·이은권·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	호	성	김성원·이언주 의원 발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	재	우	이상 2건 11월 30일 회부됨			
한국전력공사사장	김	중	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한국가스공사부사장	김	영	두	(2018. 11. 30. 이학재·조정식·김수민·김세연·			
한국석유공사사장	양	수	영	박성중·유승민·김삼화·박덕흠·유동수·			
한국수력원자력	정	재	훈	이언주·홍철호·권은희·김철민·윤영일·			
주식회사사장				박홍근·황희·박완수·송석준·강석호·			
한국광물자원공사	남	윤	환	강훈식 의원 발의)			
기획관리본부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	중	춘	(2018. 11. 30. 정부 제출)			
부 사 장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중소기업진흥공단	김	현	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부 이 사 장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	윤	모	(2018. 12. 3. 박재호·위성곤·김해영·송기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	규	연	박홍근·유승희·박정·최인호·이찬열·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사장	오	재	순	전재수·홍의락 의원 발의)			
한국에너지공단	김	창	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사 장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 윤한홍·김승희·유기준·김영우·			
				김상훈·김정훈·김수민·정유섭·김기선·			

강석진·유민봉·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4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김정훈·윤종필·김선동·나경원·김현아·원유철·임이자·윤한홍·주호영·유재중 의원 발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김정훈·윤종필·김선동·나경원·김현아·원유철·임이자·윤한홍·주호영·유재중 의원 발의)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4. 백승주·김광림·박완수·이정현·박명재·최교일·윤상직·김승희·이종명·김도읍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4. 박맹우·정갑윤·성일중·박덕흠·김기선·박완수·안상수·윤영석·이채익·추경호·김재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5일 회부됨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5. 황희·김영진·권칠승·심재권·전해철·안호영·고용진·최인호·홍익표·윤관석·김진표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5. 황희·박재호·남인순·전해철·심재권·민홍철·정재호·김진표·김영진·신창현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5. 황주홍·최도자·김중희·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민경욱·이철규·이만희·김상훈·곽대훈·박완수·이현승·김성원·이은권·송석준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황주홍·최도자·김중희·이찬열·

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6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김도읍·김정재·곽대훈·김기선·김태흠·추경호·정진석·김성원·이채익·조훈현 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김삼화·이찬열·권은희·황주홍·이용주·김중로·김수민·신용현·채이배·이용호·김관영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6. 김삼화·이찬열·권은희·이동섭·황주홍·이용주·김중로·김수민·신용현·채이배·이용호·김관영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6. 백재현·안호영·고용진·정세균·황주홍·원유철·추미애·한정애·최인호·박범계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6. 곽대훈·김석기·추경호·김규환·정갑윤·곽상도·김상훈·유재중·조경태·정진석 의원 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김종희·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14건 12월 7일 회부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박범계·안호영·백재현·유승희·송기현·최인호·이종걸·고용진·김민기·박주민 의원 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박정·추혜선·송기현·김철민·윤준호·서영교·김경협·박재호·김진표·김성수 의원 발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박범계·안호영·백재현·유승희·송기현·최인호·이종걸·고용진·김민기·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0일 회부됨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채이배·신용현·김수민·김삼화·김중로·손금주·김동철·주승용·김관영·박주선·최경환(평) 의원 발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김도읍·김정재·곽대훈·김기선·김태홍·추경호·정진석·김성원·이채익·조훈현 의원 발의)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희·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박주현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18건 12월 11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수민·이찬열·이동섭·김종희·

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강길부·조경태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손금주·서삼석·김종민·어기구·송갑석·권철승·이규희·위성곤·정태욱·김종훈·김철민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기선·윤한홍·金成泰·강효상·신상진·김상훈·김도읍·장석춘·박덕흠·윤상직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회부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김규환·김승희·김수민·임이자·김선동·민경욱·이은권·이종배·이종명·이동섭·곽대훈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추미애·강훈식·백재현·김병기·이인영·김영진·김진표·윤관석·윤준호·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장석춘·임이자·문진국·김도읍·이은권·이종배·최교일·박명재·윤상직·유민봉·이종명·강석호·김규환 의원 발의)

12월 17일 회부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김철민·박정·이찬열·김영진·윤관석·이수혁·윤영일·전재수·김현권·김민기·윤후덕·이석현 의원 발의)

12월 18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관영·김삼화·임재훈·박선숙·김수민·주승용·이동섭·유동수·엄용수·채이배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김규환·이종명·곽대훈·조배숙·장석춘·조원진·박완수·김선동·이주영·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제원 · 이현재 · 엄용수 · 원유철 · 윤상직 · 김세연 · 김선동 · 여상규 · 추경호 · 김성찬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백혜련 · 백재현 · 김영진 · 박찬대 · 박영선 · 표창원 · 이춘석 · 김현권 · 임종성 · 정세균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정유섭 · 이양수 · 홍문중 · 김승희 · 김학용 · 김종석 · 이철규 · 장석춘 · 문진국 · 임이자 · 전희경 · 김정재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원욱 · 김현권 · 정세균 · 김병기 · 강훈식 · 이후삼 · 김영진 · 안호영 · 김철민 · 우원식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원욱 · 김현권 · 정세균 · 김병기 · 강훈식 · 이후삼 · 김영진 · 안호영 · 김철민 · 우원식 · 홍의락 의원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권칠승 · 전해숙 · 김철민 · 황희 · 위성곤 · 박정 · 박광운 · 서형수 · 이석현 · 신경민 · 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4일 회부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이훈 · 우원식 · 박정 · 황희 · 어기구 · 이원욱 · 권칠승 · 김영호 · 김병관 · 설훈 · 송갑석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유동수 · 서영교 · 박찬대 · 박정 · 이찬열 · 송영길 · 정유섭 · 윤관석 · 민경욱 · 신동근 · 홍일표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윤재옥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6. 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윤상직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윤재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7일 회부됨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김승희 · 장석춘 · 이종명 · 김정재 · 엄용수 의원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김태흠 · 김도읍 · 박덕흠 · 이은권 · 주호영 · 원유철 · 이명수 · 정우택 · 박맹우 · 유민봉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유동수 · 이동섭 · 정우택 · 박선숙 · 이찬열 · 송기현 · 신창현 · 서삼석 · 김철민 · 박정 · 최운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회부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우원식 · 전해숙 · 윤후덕 · 이원욱 · 제윤경 · 강병원 · 김성환 · 홍의락 · 김현권 · 인재근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윤준호 · 백재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황희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강훈식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백재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의원 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강훈식 의원 발의)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박범계 · 백재현 · 홍의락 · 이종걸 · 최인호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박범계 · 백재현 · 이종걸 · 최인호 · 홍의락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금태섭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윤준호 · 박범계 · 전재수 · 김해영 · 이후삼 · 이학영 · 박재호 · 안호영 · 강훈식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박범계 · 유동수 · 홍의락 · 이훈 · 박영선 · 윤관석 · 정세균 · 조정식 · 서삼석 · 박재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박범계 · 백재현 · 이종걸 · 최인호 · 홍의락 · 고용진 · 임종성 · 황희 · 이개호 · 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15건 12월 31일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이학재 · 주호영 · 김세연 · 권성동 · 김선동 · 이종배 · 추경호 · 김정재 · 박인숙 · 안상수 · 박덕흠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이은재 · 홍철호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이은재 · 홍철호 의원 발의)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7건 2019년 1월 2일 회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민경욱 · 성일중 · 김재원 · 김명연 · 김정재 · 경대수 · 정갑윤 · 김석기 · 김선동 · 주광덕 의원 발의)

1월 4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한정애 · 이후삼 · 이용득 · 윤영일 · 이학영 · 이상돈 · 주승용 · 인재근 · 안민석 · 윤호중 · 신창현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한정애 · 제윤경 · 윤영일 · 이학영 · 이용득 · 신창현 · 주승용 · 이후삼 · 이원욱 · 윤호중 · 이상돈 · 안민석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권철승 · 박정 · 전현희 · 최인호 · 박영선 · 신경민 · 손혜원 · 이춘석 · 고용진 · 윤준호 · 전해숙 · 윤관석 · 이후삼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윤한홍 · 유기준 · 김수민 · 김승희 · 김성찬 · 박맹우 · 김영우 · 이주영 · 송언석 · 문진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7일 회부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

(2019. 1. 3. 김경진 · 이찬열 · 권은희 · 김종희 · 장정숙 · 이종걸 · 조경태 · 박주민 · 변재일 · 신용현 의원 발의)

1월 8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윤상직 · 김성원 · 김재원 · 김진태 · 김태흠 · 심재철 · 원유철 · 유기준 · 윤영석 · 이철규 · 장석춘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민경욱 · 박덕흠 · 신보라 · 김성원 · 윤상현 · 주호영 · 유기준 · 이완영 · 정용기 · 엄용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0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1. 10. 김삼화 · 김동철 · 이동섭 · 김수민 · 백재현 · 유의동 · 최도자 · 김관영 · 권은희 · 이찬열 · 주승용 · 임재훈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정병국 · 임재훈 · 김수민 · 원유철 · 박덕흠 · 이학재 · 金成泰 · 신용현 · 이채익 · 박맹우 · 김관영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윤준호 · 박재호 · 김해영 · 전제수 · 오영훈 · 최인호 · 황주홍 · 김종민 · 김종희 · 신창현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권성동 · 정갑윤 · 주광덕 · 이철규 · 경대수 · 박덕흠 · 박명재 · 이종명 · 김진태 · 김선동 · 홍일표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윤영일 · 김경진 · 정인화 · 이학영 · 윤호중 · 한정애 · 장병완 · 주승용 · 안민석 · 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16일 회부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6. 백승주 · 김광림 · 이정현 · 박명재 · 최교일 · 김승희 · 박덕흠 · 홍철호 · 조경태 · 김규환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정동영 · 김광수 · 박주현 · 백재현 · 임재훈 · 장정숙 · 조배숙 · 주승용 · 최경환(평) · 황주홍 의원 발의)

1월 21일 회부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1. 23. 위성곤 · 홍영표 · 우원식 · 서삼석 · 노웅래 · 이찬열 · 백재현 · 김병기 · 신창현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 · 김철민 · 홍의락 · 어기구 · 김종민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김삼화·이동섭·권은희·김관영·하태경·김중로·이찬열·박선숙·임재훈·곽대훈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김삼화·신용현·김경진·임재훈·김수민·채이배·김동철·이동섭·김관영·하태경·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5일 회부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박정·유동수·백혜련·송갑석·최운열·송기현·김성수·권칠승·금태섭·김철민 의원 발의)

전기안전관리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김성환·홍의락·우원식·신창현·김현권·이원욱·송옥주·김병관·이학영·최인호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김상훈·송언석·정태욱·박덕흠·김승희·추경호·이완영·윤영석·이종배·김기선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김성환·백재현·홍의락·우원식·신창현·김현권·송옥주·김병관·이원욱·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28일 회부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최인호·이학영·이상현·윤준호·박재호·황희·전재수·조승래·김해영·금태섭·홍의락·김성환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최인호·이학영·이상현·윤준호·박재호·황희·전재수·조승래·김해영·금태섭·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홍철호·박완수·박덕흠·추경호·조훈현·윤영일·김현아·유의동·송언석·

박명재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홍의락·김성환·김성수·김종민·송갑석·위성곤·백재현·김병관·최인호·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0일 회부됨

소상공인기본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이언주·김종석·황주홍·이찬열·이철규·김중로·성일중·하태경·김영우·조경태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윤영일·이용호·정인화·이학영·김경진·백혜련·이원욱·황주홍·주승용·장병완·박선숙·김광수·금태섭·천정배·이상현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윤영일·이학영·한정애·조배숙·김철민·이원욱·홍철호·정인화·정동영·이상현·안민석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이언주·김종석·이찬열·이철규·황주홍·김중로·성일중·하태경·김영우·조경태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윤영일·이학영·한정애·조배숙·김철민·이원욱·홍철호·정인화·정동영·이상현·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31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박맹우·김재원·윤영석·곽대훈·최연혜·정갑윤·성일중·이채익·박완수·김승희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김관영·김삼화·김종훈·김한표·박지원·조배숙·윤영일·최도자·윤소하·안호영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 윤준호·최인호·김종민·김해영·전재수·김종희·박재호·오영훈·신창현·황주홍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희·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곽대훈·김기선·성일중·윤영석·김규환·강석호·이종배·김정재·송언석·박맹우 의원 발의)

2월 11일 회부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윤한홍·이종구·김승희·이학재·백승주·박성중·김수민·권성동·김기선·성일중 의원 발의)

2월 13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곽대훈·추경호·성일중·윤영석·김규환·강석호·이종배·김정재·송언석·김성원 의원 발의)

2월 14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4. 박맹우·곽대훈·엄용수·김승희·김재원·추경호·정갑윤·박완수·이체익·권성동·성일중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임재훈·이동섭·주승용·이찬열·백재현·신용현·하태경·최도자·김관영·김삼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5일 회부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8. 김광수·정동영·박지원·장정숙·천정배·이용호·정인화·김종민·이찬열·최경환(평)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8. 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종희·윤영일·이용주·이용호·장병완·정동영·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조배숙·김관영·김광수·김종희·유성엽·윤영일·이용주·이용호·장병완·정인화·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8. 조배숙·김광수·김종희·김중로·박정·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성호·천정배·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8. 최연혜·성일중·엄용수·김규환·곽대훈·백승주·조훈현·최교일·김정재·박성중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김삼화·임재훈·권은희·유의동·이동섭·김수민·채이배·하태경·김동철·이찬열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장정숙·천정배·조배숙·김종희·장병완·정인화·김광수·유성엽·주승용·황주홍·정춘숙 의원 발의)

2월 21일 회부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이태규·이동섭·김수민·추혜선·박명재·금태섭·엄용수·유의동·오신환·이찬열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2. 이태규·이동섭·김수민·추혜선·박명재·금태섭·엄용수·유의동·오신환·이찬열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홍의락·박정·이원욱·송갑석·김성환·김철민·제윤경·신창현·박광운·

이재정 · 고용진 의원 발의)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2. 박정 · 김병기 · 남인순 · 박찬대 · 금태섭 · 권칠승 · 송기현 · 이수혁 · 윤후덕 · 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회부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유승희 · 윤후덕 · 서영교 · 김경협 · 주승용 · 이찬열 · 박정 · 최운열 · 송옥주 · 이석현 의원 발의)

2월 27일 회부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김삼화 · 김동철 · 이동섭 · 김수민 · 신용현 · 하태경 · 최도자 · 김관영 · 임재훈 · 주승용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7. 김삼화 · 이동섭 · 신용현 · 최도자 · 임재훈 · 김수민 · 김관영 · 하태경 · 김동철 · 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이훈 · 박선숙 · 민홍철 · 신창현 · 강창일 · 최재성 · 백혜련 · 황희 · 이원욱 · 한정애 · 윤후덕 · 서영교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2019. 3. 4. 정인화 · 이동섭 · 윤영일 · 홍문표 · 황주홍 · 김광수 · 김종민 · 박명재 · 유성엽 · 김중희 · 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자동차튜닝산업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윤영일 · 이학영 · 정인화 · 장정숙 · 이종배 · 서삼석 · 이원욱 · 윤호중 · 정동영 · 안민석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송갑석 · 김종민 · 홍익표 · 정세균 · 강훈식 · 이훈 · 소병훈 · 서삼석 · 김병관 · 박정 · 우원식 ·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정성호 · 백혜련 · 윤관석 · 한정애 · 김정우 · 박정 · 김혜영 · 박홍근 · 강병원 · 이찬열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이종배 · 정유섭 · 김성원 · 장석춘 · 광대훈 · 김상훈 · 김승희 · 윤한홍 · 박완수 · 최연혜 · 김석기 · 광상도 · 민경욱 · 박맹우 · 홍일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홍의락 · 송갑석 · 김성환 · 우원식 · 김병관 · 김병욱 · 김정호 · 오제세 · 백재현 · 전해숙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어기구 · 김철민 · 맹성규 · 박정 · 서삼석 · 신창현 · 안호영 · 위성곤 · 윤일규 · 이훈 · 이규희 · 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1일 회부됨